

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(SH)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50
------	-----

2005. 6. 30.
도시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6월 1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13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5년 6월 23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주택국장 박석안)

가. 제안이유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주택관련 정비사업 범위가 주거환경개선사업 · 주택재개발사업 ·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각각 구체화됨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의 사업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사업범위를 “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”에서 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· 주택재개발사업 · 주택재건축사업 · 도시환경정비사업”으로 변경함 (안 제18조제1항제4호)
- 기존의 사업범위에 “(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)”를 추가함(안 제18조제1항제9호)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석수)

가. 개요

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(SH)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, SH공사의 사업범위와 관련된 관계법률인 「도시재개발법」, 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이 폐지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SH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1항제4호 사업범위 중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“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”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에 규정된 “주거환경정비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”으로 변경하고 「서울특별시SH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1항제9호에 “설계 및 감리”를 삽입함으로써, 향후 SH공사의 사업 및 업무영역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임.

나. 사업범위 변경 관련 (안 제18조제1항제4호)

- “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”에서 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· 주택재개발사업 · 주택재건축사업 · 도시환경정비사업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,
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정비사업의 범위를 “주거환경정비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”으로 열거하고 있고 “계획수립 및 구역지정권자”인 시장이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
 - SH공사의 사업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다. 부대사업범위 확대 관련 (안 제18조제1항제9호)

- SH공사가 동 조례 제18조에 의거 수행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사업을 제외한 부대되는 사업범위에 설계 및 감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에 있어서,
 - SH공사는 이미 감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해왔으며, 뉴타운 및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비롯한 SH공사의 제반 사업 추진 시, 전문적인 설계기식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가 중대되고 있기 때문에, 설계 및 감리업무를 부대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별도 문

제가 없다고 생각됨.

- 다만, 주택공사의 경우 회사 자체 설계팀의 설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, 민간회사와 비교 시 경쟁력 유무 및 자체설계의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질의)

- 매년 적지 않은 설계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는 SH공사의 현황을 고려할 때 자체 설계 팀을 활성화하여 설계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

답변)

- 자체 설계팀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조례에 명기하여 SH공사의 업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.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소위원회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